

-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-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고시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* 기존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-339호(‘21.8.6.)호는 본 고시로 변경함.

2021년 8월 9일
부 산 광 역 시 장

< 주요 강화한 방역수칙 >

- ① 집합금지(2021. 7.19. ~ 8.22.) ▷ 유흥시설 등 1그룹 전체 + 노래연습장
(코인노래연습장: 8.2.부터 22시부터 다음날5시까지 운영제한)
- ②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▷ 실외 노마스크, 인원산정(종교 모임 포함) 제외, 주기적 검사 등

<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총 35종 >

구분	시설명
1그룹(3종)	▲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 ▲ 콜라텍·무도장 ▲ 홀덤펍·홀덤펍게임장
2그룹(5종)	▲ 식당·카페(무인카페, 편의점·포장마차 포함) ▲ (코인)노래연습장 ▲ 목욕장업* ▲ 실내체육시설(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) ▲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* 특별방역대책 적용
3그룹(11종)	▲ 학원 등 ▲ 영화관·공연장 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 ▲ 결혼식장 ▲ 장례식장 ▲ 실내체육시설(비교적 중저강도 운동) ▲ 유원시설 ▲ 오락실멀티방 ▲ 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 ▲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 ▲ PC방
기타시설 및 종교시설 (14종)	▲ 스포츠키팀(관람)장 ▲ 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(각 국공립시설) ▲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▲ 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 ▲ 숙박시설 ▲ 파티룸, ▲ 도서관 ▲ 키즈카페 ▲ 돌잔치(전문점) ▲ 전시회·박람회 ▲ 마사지업소·안마소 ▲ 국제회의·학술행사 ▲ 아마용업 ▲ 종교시설
고위험 사업장	▲ 콜센터 ▲ 물류센터

1.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* 세부내용은 기본방역수칙 등 붙임 반드시 확인

※ 파란색 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

구분	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+ 방역수칙강화
① 모임·행사	
사적 모임	▶ 4명까지 모임 가능 단, 18시~익일 5시 2명까지 모임 가능 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(18시 이후 3명 이상)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(사적모임 적용 제외) ① 동거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*이 모이는 경우 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포함 ② 아동(만12세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(돌보미 인원을 말함) ※ 위 ①, ② 외 각종 예외 불인정
기타 모임·행사	▶ 행사 금지 ▶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
② 다중이용시설	
공통수칙	▶ 마스크 착용, 방역수칙·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, 출입자 명부 관리, 주기적 환기·소독,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, 음식섭취 금지(일부 시설 미적용), 방역관리자 지정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) 등
1 그룹 시설	유흥시설 (유흥주점, 클럽(나이트)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콜라텍·무도장, 홀덤펍·홀덤펍게임장 ▶ 집합금지
2 그룹 시설	▶ 22시 ~ 다음날 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 * (편의점·포장마차)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▶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50㎡ 이상) ▶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
3 그룹 시설	(코인)노래연습장 ▶ 노래연습장: 집합금지 ▶ 코인노래연습장: 22시~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
4 그룹 시설	목욕장업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22시~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목욕장 집단감염 발생시 종사자 전수 PCR 진단검사 실시 *확진자 발생지역은 2주마다 검사 실시 ▶ 수면실 이용금지
5 그룹 시설	실내체육시설 (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)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(체육도장, GX류 6㎡당 1명) ▶ (수영장)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, 샤워실 한 칸 띄우기

구 분		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+ 방역수칙강화
		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(탁구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 ,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▶ (배드민턴, 테니스, 스쿼시 등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샤워실 운영금지 ▶ (GX류 운동) 음악속도 100~120bpm 유지, 샤워실 운영금지 ▶ (체육도장)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(겨루기, 대련, 시합 등)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 ※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(5~18시 이전 4명, 18시~익일5시 2명까지 가능)
	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	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3 그 룹 시 설	학원 등	▶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㎡당 1명(좌석 없는 경우) 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(기숙형학원)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(2~4단계)
	영화관·공연장	▶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▶ 상영관,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(정규공연시설) 기본방역수칙 적용 ▶ (정규공연시설 외 공연) 공연금지
	독서실·스터디카페	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,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(푸드존 등)에서만 섭취)
	결혼식장	▶ 웨딩홀별 4㎡당 1명(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)
	장례식장	▶ 4㎡당 1명(빈소별 50명 미만)
	실내체육시설 (비교적 증거강도 운동)	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▶ 샤워실 운영금지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(피트니스)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▶ (무도학원)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
	놀이공원	▶ 수용인원의 50% 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
	워터파크	▶ 수용인원의 30% 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
	오락실·멀티방	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	상점·마트·백화점	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

구 분		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+ 방역수칙강화
	(300㎡ 이상)	▶ 관측용 시음·시식금지,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건본품 제공금지, 휴게공간 이용금지 ▶ 집객행사 금지 ▶ 출입자 발열체크 ▶ 대규모점포(3,000㎡ 이상)의 경우 3~4단계 시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※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-322(2021.7.29.) 참고
	카지노 (외국인 카지노제외)	▶ 수용인원의 30% 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
	PC방	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) 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기 타 시 설	스포츠경기(관람)장	▶ 무관중 경기
	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	▶ 무관중 경기
	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	▶ 시설 면적 6㎡당 1명의 30%
	실외체육시설 (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)	▶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▶ 샤워실 운영 금지 ▶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※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(5~18시 이전 4명, 18시~익일5시 2명까지 가능)
	숙박시설	▶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(사적모임 인원 기준 동시 적용) ※ 객실 내 '정원'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▶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▶ 전 객실의 2/3 운영
	파티룸(공간대여업)	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▶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
	도서관	▶ 수용 인원의 50%
	키즈카페	▶ 시설 면적 6㎡당 1명
	전시회·박람회	▶ 시설 면적 6㎡당 1명 * 사전예약제 운영,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(3~4단계)
	마사지업소·안마소	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
이·미용업	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	
종교시설	국제회의·학술행사	▶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▶ 49명까지 참여 가능(인원 나누기 금지) ※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상 국제회의를 말함
	종교시설	▶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 인원의 20%(좌석 네 칸 띄우기) ▶ 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(실외 행사 금지) ▶ 음식섭취 금지, 통성기도(큰소리 기도 등) 금지

구 분		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+ 방역수칙강화
		※ 예방접종자 인센티브(인원산정 제외, 소모임 구성 등) 중단
고위험	콜센터	▶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
	물류센터	▶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
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		
마스크 착용 의무화		▶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 ※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(단,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, 개장중인 해수욕장, 도심공원(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, 송상현광장, 중앙공원) 마스크 착용 의무)
교통시설 이용		▶ 마스크 착용 ▶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* 국제항공편 제외
학교(등교)		▶ 원격수업 ▶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,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(교육부)
시험		▶ 수험생 간 1.5m 이상 간격 좌석배치, 대기자 공간마련, 시험 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
미인가 대안 교육시설		▶ 시민단체, 법인, 개인 등이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* 학원 방역수칙 적용 ▶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* 종교시설 방역 수칙 적용, 교습·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
직장근무		▶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30% 권고

※ 1, 2그룹 시설의 경우,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

2. 처분당사자

- 부산시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및 이용자
- 부산시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·모임·행사 주최·주관·참여자
- 부산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, 운송사업자·종사자, 승객 등

3.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고시 사항

4. 처분사유 :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,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우려와 휴가철 및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고자 함

5. 처분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, 제2호의2, 제2호의3, 제2호의4, 제3호 및 제49조제3항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, 제81조제10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2조제1항 별표10

6. 처분기간 : 2021. 8. 10.(화) 0시 ~ 2021. 8. 22.(일) 24시

7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8. 10.(화) 0시부터

8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9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10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

- 1) 각 위반사실에 따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,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.
- 2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2조(행정처분의 기준) 제1항 별표 10에 따라 운영중단, 시설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.
- 3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□ 시설별 거리두기 문의처(구군청 및 시 담당자)

구분	소속	직급	담당자	연락처
거리두기 관련 문의·위반신고	관할 구군청	소재지 관할 보건소 또는 재난·안전총괄부서		☎ 구군청
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식당 카페, 돌잔치전문점	보건위생과	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	전은정 김범현	☎ 888-3374 ☎ 888-3372
목욕탕·사우나 이·미용업	보건위생과	지방식품위생주사보	김대영	☎ 888-3395
노래연습장 PC방, 오락실 영화관, DVD방 멀티방	영상콘텐츠산업과	지방행정주사보	안지혜	☎ 888-5161
		지방행정주사보	정희재	☎ 888-5155
		지방행정주사보	유지영	☎ 888-5145
		지방행정주사보	정희재	☎ 888-5155
콜라텍 공연장	사회재난과 문화예술과	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주사	김동우 김미경	☎ 888-2957 ☎ 888-5044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소상공인지원담당관	지방행정주사보	신현숙	☎ 888-4757
상점·마트·백화점	소상공인지원담당관	지방행정주사보	조성란	☎ 888-4954
학원, 교습소 독서실, 스터디 카페	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	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주사보	박보은 박보은	☎ 888-2005 ☎ 888-2005
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	체육진흥과 경제일자리과	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주사보	전경국 이호규	☎ 888-3455 ☎ 888-4384
장례식장 결혼식장	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	지방시설주사보 지방행정주사보	김효진 이하영	☎ 888-3275 ☎ 888-1601
대중교통	버스운영과	지방행정주사	김강식	☎ 888-3962
	택시운수과	지방행정주사보	김동수	☎ 888-3999
	도시철도과	지방행정주사	김희원	☎ 888-4082
의료기관 약국	보건위생과	지방보건주사	조상용	☎ 888-3422
		지방보건주사	손진우	☎ 888-3382
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	노인복지과	지방행정주사	이지현	☎ 888-3274
		지방행정주사보	이동현	☎ 888-3276
콜센터시설 종교시설	투자통상과 문화예술과	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	이진호 유동현	☎ 888-4445 ☎ 888-5071